

**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
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-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-445호, 2009. 7. 15 -

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| | |
|--|--|
| <p>가.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금지(신설: 제7조의 2)</p> <p>(1)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,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, 오락 프로그램에는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</p> | <p>중간광고를 금지함.</p> <p>(2) 시행일 :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조의 2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함.</p> <p>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p> |
|--|--|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98호, 2009. 7. 17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유해중금속, 잔류용매 등의 유해물질 규격을 신설·강화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| | |
|--|---|
| <p>가. 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 등 60 품목의 성분규격 제·개정(각 세부규격 생략)</p> <p>(1) 납, 카드뮴,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</p> <p>(2)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</p> | <p>로필알콜 등 잔류용매, 불소화물, 디메틸설폭사이드 등 유해물질 규격 신설</p> <p>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p> |
|--|---|